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제 회 의 산 업 육 성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, ‘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’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국제회의 유치·개최 지원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·진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유행성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곤란한 경우 “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”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2조제3호 신설)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·개최한 자의 지원금 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15조제2항 신설)
- 다.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3일 이후 개최된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함(부칙 제2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. ~ 9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
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
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회의(문
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로 한정한다)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
제회의를 유치·개최한 자의 지원금 사용 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을 따
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제회의 종류·규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
020년 4월 13일 이후 개최된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)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「 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회의(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로 한정한다)
제15조(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·개최한 자의 지원금 사용 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

② (생략)	<u>할 수 있다.</u> 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79